

2014 브라질 회의로 가는 길¹⁰⁶⁾

전응휘¹⁰⁷⁾

1. 통신의 국제협력/조정과 인터넷 거버넌스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신 상대자 간에 세계적인 협력과 조정의 방식과 틀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범세계적인 협력과 조정의 형식을 구축하여 유지해 왔다. 유선망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간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호접속이, 무선망의 경우에는 통일적인 주파수의 배정이, 그리고 유선망이든 무선망이든 기술적인 호환성을 위한 표준 수립이 필요했고, 이를 기존의 통신 관련 국제적인 기구(ITU나 CCITT 등)들이 이러한 조정과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무선 전신이나 전화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세계적인 조정과 협력의 역할은 개별 국가가 전기통신서비스를 국가의 공공적인 독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간의 협력과 조정의 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러한 전통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세계적인 협력과 조정의 틀과는 전혀 다

른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인터넷은 출발부터 공공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 간의 연결과 확장은 네트워크들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인터넷의 기술표준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와 같은 그룹 안에서 엔지니어, 학자들의 자발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선택과 수용을 통해 채택되어 왔고, 통신을 위해 필수적인 IP주소블록의 할당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RIRs(Regional IP Registries, 대륙별로 ARIN, RIPENCC, APNIC, LACNIC, AFRINIC)와 같은 기구를 통해 해당 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오늘 인터넷을 가장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웹서비스가 사용하는 공통적인 표현형식인 표준적인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자발적인 모인 엔지니어들과 서비스사업자들, 학자들에 의해서 합의된 것이

106)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인권단체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2014년 발간하는 『인터넷거버넌스를 말한다』 라는 책에 실릴 예정입니다.

107)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인프라분과위원, ehchun@gmail.com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교신을 위해서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소체계인 도메인이름체계는 2000년 이전까지는 초창기 이를 관리했던 존 포스텔(Jon Postel)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으나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 Numbers, ICANN) 설립 이후에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최상위도메인의 생성, 유지, 관리, 분쟁조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터넷은 그 나라에서 인터넷관련 기술에 일찍 접근했던 연구자들과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협회(ISOC, Internet Society)를 통해 주로 보급되었다.

인터넷의 작동에 필요한 세계적인 협력과 조정이 실제로 이와 같은 분산적이며(decentralization), 상향식(bottom-up)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거쳐(multistakeholder consensus)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 외에도 인터넷이 웹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중화하는 90년대 중반 무렵에는 이미 대부분의 사회가 전기통신사업을 전통적인 국가의 공공부문 독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에서 민간의 자본유입과 경쟁을 통해 보다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민영화(privatization)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터넷의 상호접속은 국가간 개별 국가망의 접속을 위한 협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들 간에 다양한 사업파트너와의 협약형태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전통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과거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전기통신망에 대한 독점 위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민영화 이후 거의 모든 국가들은, 전기통신시장에 뛰어드는 신규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영화된 종전 국가독점사업자가 신규 경쟁사업자에 대하여 상호 접속의무를 가지도록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 규제를 도입한다. 그런데 인터넷의 경우에는 특정 물리망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처음부터 기존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케이블망(catv)과 같은 여타 통신망을 임차할 수 있다면 이 시장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접속서비스가 특정 물리망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인터넷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은 어떠한 물리망[유무선망, 전화회선, 전용회선, 광케이블, 케이블회선, 심지어 전력선까지]이라도 그 위에서 구현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인터넷의 특성의 하나인 패킷전송은 특정 데이터 전송경로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전체 네트워크의 극히 일부만을 보유하고서도 충분히 다른 네트워크와의 연결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이유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누구나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입할 수 있고, 필수설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규제 서비스(혹은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었다.¹⁰⁸⁾

인터넷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

¹⁰⁸⁾ 200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Brand X 판결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mon carrier로서 국가 규제의 대상)가 아니라 information service(국가가 규제하지 아니하는 영역의 서비스)라고 결론지었다. NATIONAL CABLE & TELECOMMUNICATIONS ASSN. V. BRAND X INTERNET SERVICES

며,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가능해 국가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비규제 서비스라는 점 때문에 인터넷망 간의 상호접속 문제는 사업자들 간의 상호협약의 문제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이 문제는 해당 사업자가 속해 있는 국가들 간의 협상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말 WCIT를 둘러싼 논란에서 전통적인 통신(telecommunication) 개념에 인터넷(internet)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민감한 쟁점이 되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국가규제를 받지 않는 민간사업자의 서비스협정을 전통적인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국가간 협상의 대상과 동일하게 다루려고 한 데에 있었다.¹⁰⁹⁾ 따라서 이미 인터넷접속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비규제로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인터넷을 포함하여 상호접속의 조약¹¹⁰⁾을 맺자는 제안 자체는 근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결국 WCIT 협상의 최종문서는 telecommunication에서 internet을 거의 완전

히 제외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란 이처럼 실제 오늘날 세계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 표준, 주소체계, 상호접속 등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누가 어떠한 원칙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 어떠한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이다.¹¹¹⁾

2. 인터넷주소체계 거버넌스와 ICANN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에서 인터넷 도메인주소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된 이유는 인터넷이용자들이 범용으로 사용해 오던 .COM, .NET, .ORG와 같은 인터넷 도메인주소를 특정 사업자(Network Solutions)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표(trademark)와 충돌하는 문제를 일관성 없이 대처하고 있다는 데에서 시작된 불만 때문이었다.¹¹²⁾ 주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109) “ETNO paper on Contribution to WCIT-ITRs Proposal to Address New Internet Ecosystem” <http://www.etno.eu/datas/itu-matters/etno-ip-interconnection.pdf> WCIT에 제출한 프랑스의 ETNO의 문서는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시민단체 la quadrature du net의 의견도 참조. http://www.laquadrature.net/wiki/ETNO_contribution_to_WCIT

110) 근본적으로 WCIT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로서 전통적인 telecommunication망의 국제적인 접속환경을 규율하기 위해,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1988년에 만든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래 참조. 이 문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Resolution 3과 5는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들 문서는 본회의의 결의문으로서 구속력을 갖는 ITR 본문과는 별개의 문서이다. <http://www.itu.int/en/wcit-12/Documents/final-acts-wcit-12.pdf>

111)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 이후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 논의를 위해 작업을 맡겼던 인터넷 거버넌스 워킹그룹(WGIG, Working Group for Internet Governance) 보고서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Internet governance i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by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their respective roles, of shared principles, norms, rules,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programmes that shape the evolution and use of the Internet.” <http://www.wgig.org/docs/WGIGREPORT.pdf>

112) 1995년에 당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을 운영하던 Network Solutions 사는 독자적인 도메인 분쟁해결정책을 마련하여 도메인 등록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중재자의 도메인 이전요청에 대하여 대응하였으나 그렇다고 계속 이어지는 소송을 피할 수는 없었다. p.120 “ruling the root”, Milton Mueller, 2002 The MIT Press

않았다. 특정 주권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된 국가코드도메인(ccTLD)의 경우에는 존 포스텔에 의해서 개개인 운영자들에게 배분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운영자가 해당 주권영토 밖에 거주하거나 상업 서비스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이 생겨나면서 주권 및 사업권의 충돌과 같은 문제들을 낳았다.¹¹³⁾

인터넷 도메인주소 문제는 특정 사업자의 주소독점 문제와 함께 지적재산권과의 충돌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메인 분쟁해결정책과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얼마나 어떻게 생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정책적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인터넷협회(ISOC)과 존 포스텔(IANA), IETF/IAB 등이 ITU나 세계지적재산권협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WIPA),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TA) 등과 함께 IAHC(Internet Ad-Hoc Committee)를 구성하여 7개의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제안¹¹⁴⁾하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모아서 gTLD-MoU¹¹⁵⁾를 토대로 이에 서명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연방정부가 존 포스텔이 해오던 IANA의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실패로 돌아갔고,¹¹⁶⁾ 미연방정부 주도로 ICANN을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ICANN은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는 1995년 이래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온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문제, 도메인 분쟁문제, 기존 gTLD/ccTLD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숙제로 안게 되었고, gTLD의 독점 문제는 등록기관(Registry)과 등록대행기관(Registrar)의 분리운영과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¹¹⁷⁾으로 해결해왔고, 도메인 분쟁문제는 UDRP(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¹¹⁸⁾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도메인의 운영주체와의 법적 지위문제는 gTLD의 경우에는 ICANN/IANA와 Registry/Registrar간의 계약으로, ccTLD와의 관계에서는 별도의 협약이나 서신교환방식¹¹⁹⁾으로 정비하였다. ICANN은 아

113) 존 포스텔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과 국가코드도메인(ccTLD)의 생성을 RFC1591 (<http://www.ietf.org/rfc/rfc1591.txt>)에서 밝힌 원칙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Milton Muller의 엡책 pp.125-127 참조

114) <http://en.wikipedia.org/wiki/IAHC> 참조

115) <http://www.itu.int/net-net/itu/gtld-mou/gTLD-MoU.htm> 참조

116) gTLD-MoU를 주도하던 존 포스텔의 루트서버 이동시도와 이에 제동을 건 백악관의 Ira Magaziner의 에피소드는 pp.80-86, “사이버세계를 조종하는 인터넷권력전쟁”, 잭골드스미스, 팀우 지음, 송연석옮김, NEWRUN, 2006년 11월 3일 참조.

117) 다국어도메인 생성 문제는 원래 문화적 다양성 혹은 다양한 언어공동체의 최상위도메인 생성에 대한 동등한 참여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IETF의 기술표준 논의과정에서 기존 DNS와의 7bit 호환성에 대한 고려로 인해 8bit 표준을 채택하지 못했으며, 다국어 최상위도메인 생성 문제도 신규 최상위도메인생성 일반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짐으로써 별도의 정책들을 구성하지는 못하였다.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기술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Geoff Huston의 “Internationalizing the Internet”, December 2006, <http://www.potaroo.net/ispcol/2006-12/idn.html> 참조

118) <http://www.icann.org/en/help/dndr/udrp/policy> 참조

119) 이러한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IANA-gTLD, IANA-ccTLD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은 RFC1591이 유일한 것이었다. 이들 계약이나 협약들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icann.org/en/about/agreements>

직도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에 따라 빗어질 상표와의 충돌문제 때문에 상표권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현재 제시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clearing house¹²⁰)과 도메인 분쟁해결을 위한 등록자에 대한 정보공개문제¹²¹whois policy)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규칙들을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개방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정비함으로써 인터넷 도메인주소에 대한 실효성있는 거버넌스의 틀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3.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의 확장과 IGF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NN이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가 지속되고 있었는데¹²² 바로 이 때문에 2005년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iton Society, WSIS)의 최종합의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에서는 “인터넷 네이밍과 주소” (58. “internet naming and addressing”)를 향후 논의할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제에 포함시키게 된다.

실질적으로 ICANN이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개발하고, 이를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CANN의 정당성에 대한 유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소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최종 루트 서버에 대한 운영권한이 여전히 미연방정부에 있으며,¹²³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ICANN의 자율적인 조정역할도 여전히 미상무부의 감독을 받는 구조¹²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2차 WSIS 이후에도 유엔은 인터넷 주소체계의 문제를 비롯하여 여타 인터넷에 관련된 공공정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터전으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¹²⁰ <http://blog.icann.org/2012/11/trademark-clearinghouse-update/> 참조

¹²¹ 아래 링크 참조 <http://www.icann.org/en/about/learning/webinars/whois-recommendations-implementation-24apr13-en>

¹²² 당시 이에 대한 미국연방정부의 입장은 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이 EU에 보낸 서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http://www.theregister.co.uk/2005/12/02/ric_eu_letter/ 참조

¹²³ IANA function이란 유일한 궁극의 루트 서버를 운영하면서 그 서버 안에서 최상위 도메인들의 ip주소를 기록하고 있는 root zone file을 업데이트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터넷 초기부터 존 포스텔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다가 ICANN이 설립된 이후 2000년 2월 9일부터는 ICANN과 미연방정부 NTIA와 계약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1월 10일 NTIA가 IANA의 공개입찰 RFP를 공표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IANA 계약당사자는 미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업체나 미국이 승인한 대학이나 미국 내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주법에 따라 설립된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http://www.ntia.doc.gov/files/ntia/publications/sa1301-12-rp-0043-final_04.16.2012.pdf Section C.2.1 참조

¹²⁴ ICANN 설립초기부터 미상무부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1998-2006/9/30), Joint Project Agreement(2006-2009/9/30), Affirmation of Commitments (2009- no expiration date)로 일정 시기마다 형식을 바꾸면서 ICANN과 상무부와의 관계를 규정해왔는데 이들 협약문에서는 항상 DNS의 기술적인 조정권한을 인젠가는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미상무부의 정책목표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의 AoC에서는 “in recogni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Joint Project Agreement and to institutionalize and memorialize the technical coordination of the internet’s domain name and address system(DNS), globally by a private sector led organization” 라고 기술되어 있다.

<http://www.icann.org/en/about/agreements/aoc/affirmation-of-commitments-30sep09-en.htm>

Governance Forum, IGF)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IGF의 출발은 인터넷 주소체계와 관련된 문제 논의에서 시작하였으나, WSIS의 합의에 따르면 인터넷 주소체계 문제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문제들을 관련 이해당사자 및 유관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었다.¹²⁵⁾

실제로 IGF에서 논의된 주제들은 ICANN이 다루고 있는 과제인 신규 최상위도메인 생성문제, IANA function과 미연방정부와의 계약문제와 같은 인터넷 주소체계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인터넷 안전(Safety)문제, 보안(Security)문제, 네트워크/사이트 차단 및 프라이버시문제, 표현의 자유문제, 인터넷 접속권(Internet Access Rights)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개발(Internet Governance for Development) 문제, 이동통신 단말기와 플랫폼문제 등 다양한 주제

들을 광범하게 다루어왔다.¹²⁶⁾

다른 한편, IGF가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정책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기는 하지만, 실효성있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담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¹²⁷⁾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ECOSOC)는 IGF의 개선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하였는바, IGF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현행 멀티스테이크홀더 자문그룹(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의 선출과정을 좀 더 체계화하고, IGF 회의의 준비과정이나 실제 회의진행의 기록, 보고서의 작성 등을 정비하도록 했으며, 사무국을 강화하고 재원조달을 강화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¹²⁸⁾ 다른 한편 ECOSOC은 이와 함께 원래 IGF의 과제였던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의견수렴을

125) WSIS의 최종합의문인 Tunis Agenda의 72.번 참조. <http://www.itu.int/wsis/docs2/tunis/off/6rev1.html> 특히 아래 다섯 항목은 IGF의 임무가 주소체계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관련 공공정책 영역들을 망라하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 a. Discuss public policy issues related to key elements of Internet governance in order to foster the sustainability, robustness, security,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 b. Facilitate discourse between bodies dealing with different cross-cutting international public policies regarding the Internet and discuss issues that do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any existing body.
- g. Identify emerging issues, bring them to the attention of the relevant bodies and the general public, and, where appropriate, make recommendations.
- j. Discuss, inter alia, issues relating to critical Internet resources.
- k. Help to find solutions to the issues arising from the use and misuse of the Internet, of particular concern to everyday users.

126) 2012년 IGF 회의 보고내용 참조 <http://www.intgovforum.org/cms/2012-igfbaku>

127)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동으로 인터넷공공정책을 다루는 기구를 유엔안에 두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 인도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유엔인터넷정책위원회(UN Committee for Internet-Related Policies-CIRP)를 제안하기도 했다. (http://www.culturalivre.org.br/artigos/IBSA_recommendations_Internet_Governance.pdf 과 <http://igfwatch.org/discussion-board/indias-proposal-for-a-un-committee-for-internet-related-policies-cirp> 참조)

128)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UN ECOSOC 16 March 2012, http://unctad.org/meetings/en/SessionalDocuments/a67d65_en.pdf IGF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과 이 작업반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Milton Mueller, "IS THERE ANY HOPE FOR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July 30, 2012 참조 <http://www.internetgovernance.org/2012/07/30/is-there-any-hope-for-the-internet-governance-forum/>

위해 이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¹²⁹⁾

이러한 개선노력과 함께 2013년 10월 발리 IGF에서는 MAG이 사전에 제출된 여러 워크샵 주제들을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여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였고, 추후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Dynamic Coalition¹³⁰⁾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정책 과제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부담을 안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¹³¹⁾

4. 인터넷 주소체계 외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과제들

ICANN과 IGF에서의 인터넷관련 정책과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OECD는 꾸준히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들을 천명해왔고¹³²⁾ 특별히 인터넷 보안(security)¹³³⁾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이 시작한¹³⁴⁾ 사이

129) UNCSTED의 WGEC(working group for enhanced cooperation)의 구성 및 배경에 대해서는 <https://www.apc.org/en/blog/un-working-group-enhanced-cooperation-report-secon> 참조. WGEC의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최근의 분석자료는 다음 링크 참조 http://unctad.org/meetings/en/SessionalDocuments/WGEC_Summary_of_Responses.pdf

130) Dynamic Coalition은 2006년 첫 IGF 회의 때부터 구성해 왔는데 현재까지 주제별로 총 11개의 dynamic coalition이 구성되어 있다. <http://www.intgovforum.org/cms/dynamiccoalitions> 참조

131) 현재 2014년에는 터키의 이스탄불, 2015년에는 브라질, 2016년에는 멕시코로 회의 개최국이 정해졌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IGF가 실질적으로 인터넷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32) OECD가 2012년 초 채택한 “인터넷 정책결정에 관한 원칙”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 Making, 13 December 2011) 문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원칙을 비롯하여 인터넷중개사업자(ISP)의 책임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정책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합의된 내용은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수립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http://www.oecd.org/sti/ieconomy/49258588.pdf> 참조

133) 인터넷 보안(security)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988년부터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10년에 17개 국가 전문가들이 기초적인 원칙에 대하여 합의한 문서(“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et Security” -약칭 GGE[Group of Government Experts] Report라고 칭함)가 있다. http://www.un.org/disarmament/HomePage/ODAPublications/DisarmamentStudySeries/PDF/DSS_33.pdf 참조. 그러나 이 문서에서 합의된 내용은 신뢰구축, 정보교환, 역량구축 등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i) Further dialogue among States to discuss norms pertaining to State use of ICTs, to reduce collective risk and protect criti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ii) Confidence-building, stability and risk reduction measures to address the implications of State use of ICTs, including exchanges of national views on the use of ICTs in conflict;
 (iii) Information exchanges on national legislation and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security strategies and technologies, policies and best practices;
 (iv) Identification of measures to support capacity-building in less developed countries;
 (v) Finding possibilities to elaborate common terms and definitions relev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4/25. “ 위 문서의 recommendation 부분

134)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채택한 “Seoul Framework for and Commitment to Open and Secure Cyberspace” 문서 내용 http://www.seoulcyber2013.kr/en/media/View.do?media_id=2242 참조. 이 문서는 본질적으로 앞의 GGE 보고서 및 OECD, G8 회의 등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영국에서 시작된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미흡하나 마 이해당사자들의 개방적 참여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여타 국제적인 논의와 차이가 있다.

버스페이스 총회 (Cyberspace Conference)가 별도로 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다른 한편 2013년 5월에 열린 ITU의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orld Telecommunication/ICT Policy Forum, WTPF) 회의¹³⁵⁾는 다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는데, 실제로는 의사결정에 있어 다자간 논의방식(multi-lateral 혹은 inter-governmental 방식)과 이해당사자들의 개방적인 참여방식(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에 대한 논의가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데 WTPF 회의에서 좀 더 명확해진 것은 기존의 이해당사자의 개방적 참여모델에 따른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가 협력과 조정의 대상¹³⁶⁾이라는 점과 다자간 논의방식을 통해 논의해야 할 인터넷 관련 정책과제들¹³⁷⁾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였다.

현재 ECOSOC은 2014년 4월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인 WSIS+10 고위급회의(WSIS+10

High Level Event)를 전후로 WSIS의 후속작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WGEC)의 결과물을 취합하여 총회에 보고할 예정¹³⁸⁾이며, ITU는 WTPF 회의의 결과를 포함하여 2014년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ITU 전권회의에서 이에 대한 후속논의를 이어가게 된다.¹³⁹⁾

IGF는 이미 인터넷 주소체계 이외의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해 왔고, IGF에서도 반복해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던 인터넷 보안문제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의 장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미 2012년 WCIT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인터넷 상호접속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들이 의제로 제시된 바 있었으며, 2013년 WTPF 회의 역시 인터넷의 기술 표준이나 주소체계에 관련된 정책과제와는 별도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기술표준이

¹³⁵⁾ WTPF 회의는 ITU의 전권회의(Potentiary Conference)의 위임에 따라 특정 정책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구속력 없는 협의의 장이다. 2013년 5월의 WTPF 회의가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2012년 말 WCIT 회의에서 다시 추후 인터넷관련 논의를 할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회의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¹³⁶⁾ “· On the basis of reciprocity, to explore ways and means for greater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ITU and relevant organizations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the Regional Internet Registries (RIRs), th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the Internet Society (ISOC) and the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IP-based networks and the future internet, through cooperation agreements, as appropriate, in order to increase the role of ITU in Internet governance so as to ensure maximum benefits to the global community.” THE ITU SECRETARY-GENERAL’ S REPORT for the Fifth World Telecommunication/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licy Forum 2013, <http://www.itu.int/md/S13-WTPF13-C-0003/en> 참조

¹³⁷⁾ 이러한 정책들로서는 인터넷 상호접속문제인 IXP(Internet Exchange Point) 문제, 인터넷 인프라 투자 및 관련정책 강화문제, IPv6의 전환정책 및 역량강화문제, 이해당사자 참여(multistakeholderism)문제 및 협력강화(Enhanced Cooperation) 문제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위 WTPF 사무총장 보고서 Annex B:Draft Opinions 부분 참조

¹³⁸⁾ UNCSTD WGEC의 결과물은 그 상위기구인 ECOSOC에 보고되며 ECOSOC은 이를 토대로 2014년 9월에 열리는 제69차 UN 총회의 제2위원회(Second Committee)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¹³⁹⁾ 이러한 인터넷거버넌스 일정 전반에 대해서는 <http://bestbits.net/wp-uploads/diagram.html> 참조

나 주소체계와 같은 정책과제가 아닌 여타 인터넷 공공정책 문제를 논의해서 어떤 결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¹⁴⁰⁾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논의의 장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개방적 참여방식(multistakeholderism)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다자간 협의의 틀(multilateral 혹은 intergovernmental decision making)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인지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5. 인터넷 거버넌스의 세계화와 브라질 회의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ICAN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IANA function 및 ICANN에 대한 감독권한이 미연방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이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유지시켰고, 2013년 미국 국가안

보국(NSA)의 대량감청에 대한 스노든의 폭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미연방정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루세프(Dilma Rousseff)의 유엔총회 연설¹⁴¹⁾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비판으로서 여러 나라들의 반향을 받았다. 지우마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NSA의 대량감청이 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주권 국가에 대한 무례라고 비난하면서,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국가들의 또 다른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우마 대통령은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거버넌스와 인터넷 이용을 위한 민간차원의 다자간 협력틀”(“civilian multilateral framework for the governance and use of the internet”)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¹⁴²⁾

다른 한편, 이제까지 인터넷의 기술표준 및 인

¹⁴⁰⁾ 이처럼 인터넷의 정상적인 운용과 진화발전을 위해서 세계적인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정책 사안이지만 적합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정책 사안들을 일컬어 orphan issues라고 지칭한다. orphan issue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Chris Marsden 같은 학자는 IPv6나 상호접속 문제 외에도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이나 망중립성/Over the Top 서비스와 같은 주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Chris Marsden, “Internet Governance Series: The Road from Bali to Rio... to Dystopia?” <http://blogs.lse.ac.uk/mediapolicyproject/2013/10/31/internet-governance-series-the-road-from-bali-to-rio-to-dystopia/> 참조

¹⁴¹⁾ 지우마 루세프(Dilma Rousseff)의 2013년 10월 유엔총회 연설문 참조. http://gadebate.un.org/sites/default/files/gastatements/68/BR_en.pdf

¹⁴²⁾ 지우마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민간 다자간 협력틀이 다음과 같은 원칙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1 -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of the individual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 2 - Open, multilateral and democratic governance, carried out with transparency by stimulating collective creativity and the participation of society,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 3 - Universality that ensures the social and human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inclusive and non-discriminatory societies,
- 4 - Cultural diversity, without the imposition of beliefs, customs and values,
- 5 - Neutrality of the network, guided only by technical and ethical criteria, rendering it inadmissible to restrict it for political, commercial, religious or any other purposes. “

터넷 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과 운영을 담당 해온 기구¹⁴³⁾들은 2013년 10월 우루과이에서 모여 스노든의 NSA 대량감청에 대한 폭로를 계기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미연방정부 중심의 인터넷 주소체계 거버넌스의 틀을 세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몬테비데오 선언¹⁴⁴⁾을 공표하였다.

ICANN의 CEO 파디(Fadi)는 몬테비데오 선언 직후 브라질을 방문하여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브라질의 지우마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민간차원의 다자간 협력틀”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논의에서 몬테비데오 선언에서 천명된 입장을 포함¹⁴⁵⁾하고, 그간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시되어온 인터넷 주소체계 이외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사안들(혹은 앞에서 말한 orphan issues)에 대한 논의의 틀을 구성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브라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지난 달 말 브라질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브라질 회의”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Internet Governance, GMMIG) 준비 일정과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밝혔다.¹⁴⁶⁾ ¹⁴⁷⁾

– 회의의 명칭은 세계인터넷거버넌스회의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Internet Governance”)로 한다.

– 회의 일정은 2014년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상파울로에서 개최한다.

– 회의의 목적은 1)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보편적 원칙과, 2)인터넷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3) 그러한 제도적 틀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과 이해당사자 참여방식에 따르는 제도적 틀 두 가지에 대한 최종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¹⁴³⁾ 몬테비데오 선언에는 RIRs, IETF, IAB, W3C, ISOC, ICANN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기구들은 포괄적으로 I*(star) organizations 혹은 technical community라고 지칭된다. <http://www.icann.org/en/news/announcements/announcement-07oct13-en.htm> 참조

¹⁴⁴⁾ 이 선언에서는 인터넷 주소체계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IANA/ICANN에 대한 감독권한을 세계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참여방식에 의한 세계화” (“the globalization of ICANN and IANA functions, towards an environment in which all stakeholders, including all governments, participate on an equal footing.”)를 주장하였다.

¹⁴⁵⁾ 현재 IANA contract와 ICANN의 AoC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안이 제시된 적은 없지만, ICANN CEO 파디는 여러 곳에서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가 미연방정부가 아니라 “세계 이해당사자 집단” (Global Multistakeholder)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디가 ICANN Webinar에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한 <http://audio.icann.org/ig-1900-08nov13-en.mp3> 참조. 이 문제를 ICANN의 membership의 문제로 분석한 Milton Mueller의 “A CONTRACT WITH YOU” November 5, 2013 <http://www.internetgovernance.org/2013/11/05/a-contract-with-you/> 도 참조.

¹⁴⁶⁾ 공식 기자회견문은 <http://www.nic.br/imprensa/releases/2013/rl-2013-62.htm> 참조.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지난 달 18일 브라질정부와 Inet.org의 Adiel Akplogan가 협의한 내용을 참조. <https://nro.net/pipermail/i-coordination/2013-November/000077.html>

¹⁴⁷⁾ 브라질 회의는 브라질 쪽(CGI.br과 브라질정부)과 인터넷 이해당사자 집단 두 축에 의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이해당사자 집단은 몬테비데오선언을 주도한 I* 그룹들(혹은 기술자집단, 혹은 이들 집단의 coalition이라고 부름)을 주축으로 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 사업자집단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 후자의 이해당사자 집단은 브라질회의를 위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해 Inet.org라는 사이트에 메일링리스트를 구축했으며 이 메일링리스트는 AFRINIC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http://Inet.org/> 참조

- 내부검토와 제안문을 다듬는데 걸리는 시간 최소 60일을 고려하여, 제안서는 2014년 3월 1일을 제출 마감시한으로 한다. 누구나 어떤 집단이나, 이때까지 위 회의목적에 관련된 제안을 할 수 있다.

- 여러 제안들 중의 하나로 ICANN의 “인터넷의 미래에 관한 전략패널”은 서던캘리포니아대학(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아넨버그재단(Anenberg Foundation)과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과 함께 협력하여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과 제도적 틀에 대한 제안문”을 제출하며, 그 최종제안서 제출시한은 2월말까지로 한다.

- 회의에는 정부, 시민사회, 학술분야, 국제기구, 기술자 집단 및 사업자 집단이 모두 참여한다.

- 회의 전체는 브라질 인터넷 운영위원회(Brazilian Internet Steering Committee, CGI.br)가 담당하며, 정보정책을 담당하는 Virgílio Fernandes Almeida 교수가 관장한다. 전체 운영위원회(global multistakeholder steering committee)는 브라질 CGI와 브라질정부, 1net의 대표자(기술자집단, 학술집단, 시민사회, 사업자집단 포함)가 함께 참여한다.

-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집행운영위원회(Logistics and Organizational Committee)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를 둔다. 집행운영위원회는 전적으로 브라질 CGI가 운영한다. 정부자문위원회(Government Advisory Committee)는 정부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자문위원회는 브라질 외무부의 베네딕토 대사

(Ambassador Benedicto)가 관장한다. 고위이해당사자위원회(High Level Multistakeholder Committee)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관련 정책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위원회는 8명의 정부 고위급인사와 8명의 중견급 인터넷 관련 인사들로 구성한다. 실무적인 운영을 위해 이해당사자 실무위원회(Executive Multistakeholder Committee)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회의 의제 설정, 초청자 관리 및 전체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2014년 3월 1일까지 제출된 여러 제안서들을 하나의 제안서로 통합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실무위원회는 6명의 정부대표자와 6명의 인터넷관련 이해당사자 집단 대표로 구성한다. 인터넷관련 이해당사자 대표는 사업자집단, 시민사회, 기술자집단 각 2명씩 할당하여 구성한다.

- 회의진행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은 브라질정부가 담당한다.

결국 브라질 회의에서는 현재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ICANN의 IANA function 및 ICANN 감독과 관련된 현행 계약구조의 세계화 방안과 함께,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인터넷 기술표준 및 주소체계 문제와는 별개의 인터넷관련 정책사안들을 이해당사자 참여원칙에 따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토대가 되는 제안은 아마도 ICANN의 “인터넷 협력의 미래를 위한 전략패널”(Strategic Panel on the Future of Global Internet Cooperation)이 2월말까지 제출할 문서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패널은 2013년 12월 12일과 13일에 영국

런던에서 첫 회의를 가지며 2014년 초까지 제안서 초안을 작성,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¹⁴⁸⁾

6. 맺음말

인터넷의 운용에 관한 공공정책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는 단지 이해당사자 집단의 개방적 참여를 통해서 하느냐 혹은 정부간 다자간 협력구도에서 결정하느냐 하는 선호에 따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인터넷의 기술표준이나 주소체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집단의 개방적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인터넷 이용당사자들에 의한 선택과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주소체계를 다루는 거버넌스 구조가 미연방정부의 독점적 감독권한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개선방안이 논의되어 왔고 또 새롭게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인터넷 주소체계의 거버넌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조정해야 할 정책사안은 계속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

안에는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 인터넷 보안(security), 인터넷상 호접속, IPv6, 인터넷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망중립성과 응용서비스(Over the Top application services)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관련 정책사안들은 사안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나 OECD, ITU/WTPF, IGF,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등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는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브라질 회의는 이처럼 새롭게 대두하는 다양한 인터넷 관련 정책사안들을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제도적 틀 안에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서 처음으로 이해당사자들과 정부대표자들이 공동으로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회의이기도 하다.¹⁴⁹⁾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당사자들은 이해당사자들대로 이러한 다양한 인터넷관련 정책과제들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거버넌스 원칙과 제도적 틀에 대한 유효하고도 실질적인 의견을 정리해야 할 때이다.

148) “인터넷협력의미래를 위한 전략패널”의 구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 참조. <http://www.icann.org/en/news/announcements/announcement-2-17nov13-en.htm>

149) 2003년과 2005년의 WSIS 회의 역시 유엔 총회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원칙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대표자들이 여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조만 하고 배타적으로 정부대표자들만이 의사결정을 하는 전통적인 유엔의 의사결정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데에 머물렀다.

ABSTRACT

A Glimpse into Brazil Conference

Chun Eung Hwi¹⁵⁰⁾

This short report introduces the general background why Brazil conference is being prepared and what topics would be undertaken and what goals are being taken into account.

It overviews what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has had in i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how such differences had been formed from its technological differences and the regulatory policy shift from common carrier regulation to privatization. Moreover, the fact that open, voluntary, bottom-up, diverse stakeholder's participation had evolved throughou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d established the present multistakeholder governance model from technological standardization to addressing scheme policies. ICANN, which has governed internet addressing schemes since the earlier 2000s, had developed address policies including IANA function from Jon Postel and technical community's legacy management system into contract based formation between ICANN and gTLD, ccTLD

registries. And it made dispute resolution policies responding to trademark disputes and resolved gTLD monopoly issue by introducing new TLD generation and the separation of registry and registrar. However, there had been challenges on the legitimacy of ICANN due to its dependency on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particularly in its oversight role over ICANN and IANA contract.

WSIS raised up internet governance issues including addressing governance, and set up IGF as a discussion platform for multistakeholders to discuss and share all views on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IGF's loose and non-binding discussion once frustrated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but more focused discussion and visible outcomes have consolidated its unique role for internet governance discourses. Particularly, IGF addressed many emerging internet related issues like cybersecurity, privacy, net neutrality, development related issues. WTPF of 2013, after WCIT debate on whether tradi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ould

150) Chairperson of OpenNet Korea

be applied to internet infrastructure, suggested other governance issues such as the transition to ipv6, IXP coordination etc.

How to make sure the legitimacy of internet addressing governance and how and where other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could be undertaken are fundamental tasks for internet governance. Brazil conference, which has been motivated by the breakdown of trust in internet governance from NSA mass surveillance revealed by Snowden, faces these questions and try to make consensus on principles, institutions and roadmap for internet governance in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way.